

- 나) 동일교 기간 단절없는 재계약시 :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함.  
 (연가일수 = 과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× 계약개월 수 ÷ 12) : 소수점이하 반올림

[기간의 단절없는 동일교 1년 재계약시에 연가 일수]

| 과거 재직기간     | 연가 일수 |
|-------------|-------|
| 1년 미만       | 11일   |
| 1년 이상 2년 미만 | 15일   |
| 2년 이상 3년 미만 | 15일  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6일   |

- ※ 재직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제외한 이전의 연속된 동일교 근무경력만을 산정
- ※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시 (세부 산정 방식은 연가 환수시 기준에 따름)
  - 1년 재직 후 1년 재계약시 → 15일 (연가일수 15일 × 12/12)
  - 1년 재직 후 6개월 5일 재계약시 → 8일 (연가일수 15일 × 6/12)
  -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시 → 9일 (연가일수 16일 × 7/12)

- 다) 연가 환수 :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(퇴직)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 산정하며, 기 사용한 연가가 재 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(결근) 처리함.

[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의 연가 산정]

$$\text{재 산정 연가일}^1) = \frac{\text{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^2)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기 연가일}$$

※ 재 산정 연가일<sup>1)</sup> :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 
 ※ 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<sup>2)</sup> :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을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

- 2) 공무상병가 :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, 계약 기간 범위에서 180일까지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음
- 3) 일반병가 : 정규교원의 병가 운용 규정을 준용하며,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

$$\text{최대병가일수} = \text{일반병가} 60\text{일} \times \frac{\text{계약월수(일 단위 절사)}}{12}$$

※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연가 처리

- 4) 특별휴가 :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(특별휴가) 제1, 2, 3, 4, 5, 10, 11, 12, 13, 14, 15, 16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
- ①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(5항)과 가족돌봄휴가(14, 15항)의 사용 기록은 NEIS시스템 개선 전까지 학교별 별도기록 관리하며 퇴직 후 재임용교에서 요청시 제공함
  - ② 가족돌봄휴가는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예규」에 따르며,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부여함